

「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
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9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지역 청년에게 관내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임
-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1) 사무명 :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

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) 필요성 :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, 인재매칭, 사업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3)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 전반

가) 세부 사업계획 수립

나) 기업발굴, 청년-기업 매칭,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
다) 기업 프렌드십 운영,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연계 등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4. ~ 2027. 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4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사업비	간접비	비고
340	68	238	34	

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.12.26)

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9) 부서의견 : 기업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

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
적합하다고 판단됨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-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-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- 본 동의안은
 - 관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

커지고 있어¹⁾ 관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.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그간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, 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관련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과 더불어 관내 기업들과도 꾸준히 소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유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

- 인턴십 이후 실제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 수가 저조한 상황으로, 이는 수탁기관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전·사후

1) 구미시 20세~39세 인구현황(출처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)

(단위:명)

	2023	2024	2025
총인구수	405,506	404,820	403,883
20~29세	49,373	48,816	43,985
30~39세	58,854	58,341	57,715

모니터링 부족, 멘토 역할 미흡, 전공과 무관한 업무 배치, 전반적인 관리·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.

- 지역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(재)전자정보기술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업 실적과 성과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동의안 심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